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 자본시장 역할과 정책과제*

노 희 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구온난화로 지구촌의 존속가능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 금융영역은 자본시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녹색 리스크가 숨어있고, 이러한 높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자에게 합당한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녹색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녹색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1) 녹색금융의 개념

녹색금융은 금융 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동학술행사(2011. 6. 15(수), 롯데호텔 37층 가네트스위트룸),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제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 수단 제공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지수의 개발이나 녹색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녹색기업의 고위험-고수익 특징으로 인하여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은 환경 파괴활동에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심사 · 감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대출시 대출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여부를 스크리닝(screening)하거나 환경 리스크 관리를 여신의 조건으로 하는 상업적 대부자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법안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동 법은 기업이 환경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환경정화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대부자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기업에 대출시 투자 대상의 환경 리스크를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형태로 거래되므로 금융의 영역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녹색금융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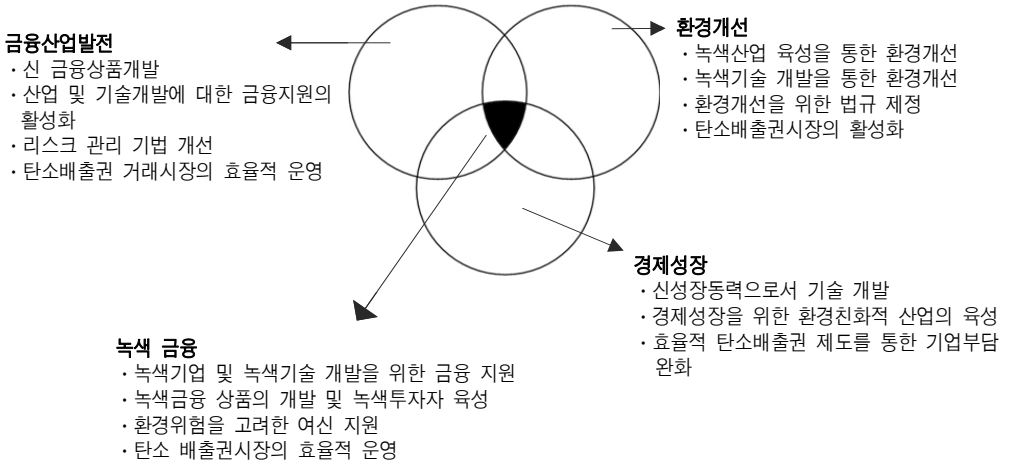

자료: 노희진(2010a).

2) 녹색금융의 필요성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사업은 그 특성상 고위험-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의 벤처(venture) 사업 특성을 지닌다. 즉, 담보가치가 있는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의 기술, 사업모델 등이 중요한 자산이며, 현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에 기대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녹색기업은 신제품 및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과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은행 대출의 경우, 원본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대출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험이 내재하는 투자 대상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환경산업이나 에너지 영역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같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대상에 적합한 투자자가 존재하므로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러한 녹색산업의 발전과 녹색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원 투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성장가능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창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녹색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하며 금융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민간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자금규모와 정부-민간투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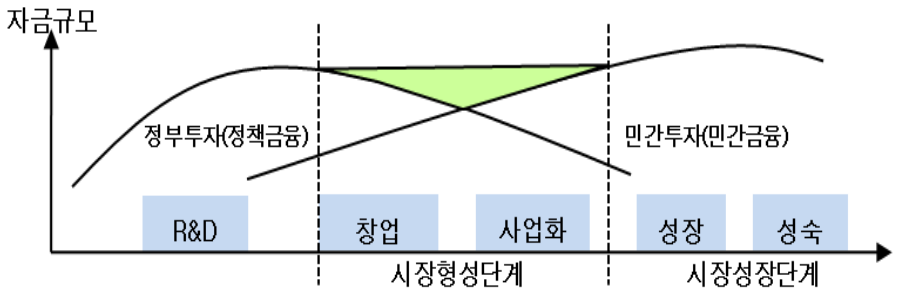

자료: 국무총리실(2011).

벤처기업의 특성을 지닌 녹색산업의 사업적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debt-financing)은 부적합하므로 모험자본의 역할이 필요하고, 성숙단계에 진입할수록 기업공개(IPO), 주식발행 등 적극적 자금 조달 방식을 필요로 한다. 즉, 녹색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및 녹색금융상품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림 3>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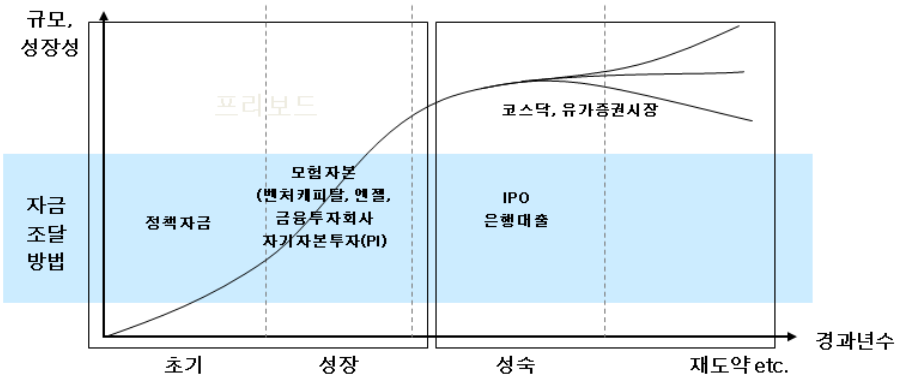

<표 1> 국내 금융기관의 환경관련 국제 협약 참여 현황

국제협약	총참여기관 수		참여금융기관
	2008.12	2011.5	
GRI 작성	35개	102개	대우증권, 동부화재, 하나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UNEP/FI	8개	8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현대 화재보험 등 8개 금융기관
UN PRI	9개[1)]	18개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등 9개 금융기관 및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2개
UN Global Compact	151개	191개	기업은행, 대우증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
CDP	2010년 Investor CDP 정보제공 한국기업 수: 86개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은행, 산은자산운용, 현대증권, 사학연금 등 28개사(운용자산 US$ 1.3조, 약 1,430조)

주: 1) 2009년 4월말 기준.

2.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1)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

2009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에 녹색금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1)] 녹색금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녹색금융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을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에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④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⑤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국내 개별 금융기관은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GRI, UNEP/FI, UN PRI 등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무 또는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요소에 대한 고려를 촉구하는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Green Fund Scheme과 같이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녹색금융 지원을 위하여 녹색인증제도와 녹색세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림 4>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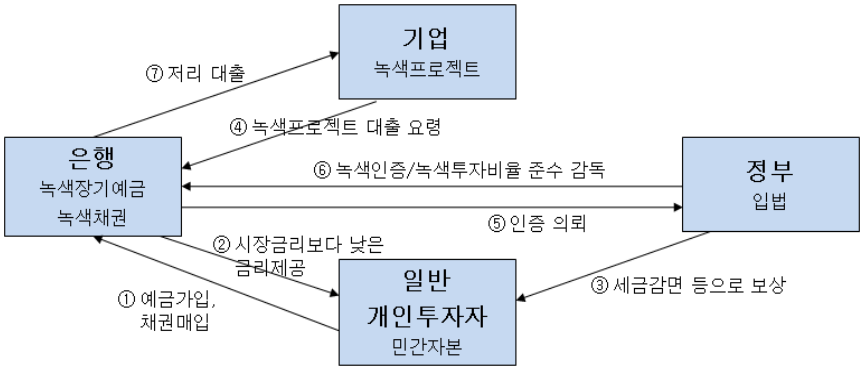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09).

녹색인증제도는 2010년 4월 도입되어 녹색산업 지원 대상 · 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관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녹색기술, 녹색기업 등 투자적격 대상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표 2>에서와 같이 2011년 4월 25일 기준 28개 녹색전문기업, 9개 녹색사업 등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동 제도는 2011년 5월 운영 요령을 개정하여 금융권 여신심사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성 평가(성장성, 수익률 등)를 삭제하여 기술성 · 녹색성 배점을 확대하였다.

<표 2> 녹색인증제도 인증 현황

구분	인증신청	서류검토	평가진행	인증확정
녹색기술인증	724	236	67	279
녹색사업인증	67	43	0	9
녹색전문기업	52	19	3	28
합계	843	298	70	316

주: 2011년 4월 25일 기준.
자료: www.greencertif.or.kr

이러한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개인)에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득세 면제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그 만큼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전문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011년 5월말 현재 비과세 녹색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3> 비과세 녹색상품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10%, 3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자료: 녹색금융 포털사이트.

녹색금융은 주로 정책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기관은 정책대출, 정책펀드 및 정책보증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책대출은 산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기관이 중심이 되어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 사업) 대출, 녹색인증기술, 사업 기업 대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2011년 1분기 기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금리 우대(최대 0.5%)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대출 실적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1분기
32,352	60,075	15,079

주: 지원실적은 당해 연도 중 공급규모이며, 잔액은 아님.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11).

녹색정책펀드는 정부가 민간투자자와 함께 출자하여 결성한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표 5>에서와 같이 2011년 3월 기준 총 4조 6천억원의 정책펀드가 조성되어 있다. 투자집행률은 펀드별 12.2%~29.0% 수준이며, 투자대상 기업 발굴 단계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수준이다.

정책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기업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주요 정책자금별 특징 및 지원 현황

정책자금	주무부처	투자대상 및 특징	조성액 (억원)	투자액 (억원)	집행률 (금액기준,%)
신성장동력 펀드	지식경제부	신성장분야 기업 대규모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8,701	2,180	25.1%
모태펀드 내 신성장동력 자펀드	중소기업청	창업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6,481	1,261	19.5%
신성장동력 산업육성펀드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	30,736	3,759	12.2%
녹색산업 투자회사	정책금융공사	녹색인증사업, 녹색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500	145	29.0%

주: 2011년 3월말 기준.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11).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은 녹색성장산업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보증료 감면(최대 0.5%), 보증한도 확대(30억→70억) 및 보증비율 확대(85%이내→90% 부분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 6>에서와 같이 2011년 1분기 기준 녹색보증과 녹색보험을 통해 약 3조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보증·보험 실적

(단위: 억원)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보증	신용보증기금	26,240	36,118	10,432
	기술보증기금	16,621	18,201	5,662
보험	무역보험공사	7,441	41,416	14,420
합계		50,302	95,735	30,514

주: 지원실적은 당해 연도 중 공급규모이며, 잔액은 아님.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11).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금융은 크게 은행과 금융투자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2]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한 민간은행이 녹색기업 육성과 녹색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예금 및 적금을 수신하고 있는데, 고객은 녹색캠페인, 승용차 요일제 등의 참여, 종이서류 또는 통장발행 생략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

2) 녹색카드 또는 녹색보험의 경우 궁극적으로 저탄소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녹색기업, 녹색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함. 녹색카드의 경우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카드 사용, 친환경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또는 이용실적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기부를 통해 녹색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음. 녹색보험은 고객(피보험자)은 자전거보험, 승용차요일제 특약, 이메일을 통한 보험 관련 서류 수령 등을 통해 녹색생활의 실천을 유도하며, 기존 보험 대비 자전거사고보장(사망시 최대 1억 5천만원),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확대(최대 8.7%)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시 금리우대(최대 1.1% 차감), 각종 수수료 면제, 자전거 보험 무상가입 등의 혜택을 얻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녹색일반대출은 녹색성장산업, 녹색인증기술/사업 · 기업,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자금 등 친환경제품 제조기업 등에 대해 대출한도나 대출금리 등 기존 대출에 비하여 우대하는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크게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LED, CNG 버스 등 녹색시설 설치 및 제품 구입에 관련된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그린 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 형태로 녹색금융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011년 5월말 기준 14개 은행이 29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 여신은 <표 7>에서와 같이 2010년 말 기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을 합쳐 총 9조 2천억원 규모로, 이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2009년 9월 말 이후 민간은행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7> 은행권 녹색기업 여신 잔액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9월말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국책은행	27,754	33,198	53,652	70,163
민간은행	15,368	17,493	22,533	22,240
민간은행 비중	36%	35%	30%	24%

자료: 청와대(2011).

금융투자업에서는 주로 투자전문기관이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활동을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2011년 5월말 기준 공모형 국내 투자 녹색펀드는 총 114종으로 순자산액은 3,636억원으로 전체 국내 투자형 공모펀드 시장 대비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8> 공모형 국내 투자펀드 현황

	펀드 수(개)	순자산액(억원)
국내공모펀드	1,829	1,276,292
녹색펀드	114	3,636
녹색펀드 비중	6.2%	0.3%

주: 1) 집합투자분류코드 중 녹색성장만 구분되는 코드가 없어, 펀드명 중 "녹색", "그린", "재생" 등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포함된 펀드만으로 산출.
2) 2011년 5월말 기준.
자료: 펀드닥터프로 DB 추출.

또한 범위를 넓혀 공사모를 모두 포함한 국내외투자 펀드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1년 5월말 기준 전체 녹색관련 펀드는 총 233종으로 2007년 이후 신규 설정 펀드가 증가하여 누적설정액은 1조 983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9> 녹색관련 펀드 신규 설정 추이

연도	설정펀드 수	설정액(억원)	순자산(억원)
1998	1	3.22	3.26
1999	5	43.60	48.28
2000	–	–	–
2001	–	–	–
2002	–	–	–
2003	–	–	–
2004	–	–	–
2005	1	205.59	232.82
2006	22	674.33	777.73
2007	46	3,859.60	3,379.17
2008	36	1,094.35	1,224.07
2009	94	2,969.13	3,154.13
2010	20	220.54	230.54
2011.5	8	1,912.82	1,942.15

주: 1) 집합투자분류코드 중 녹색성장만 구분되는 코드가 없어, 펀드명 중 "녹색", "그린", "재생" 등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포함된 펀드만으로 산출.
2) 2011년 5월 말 기준.
자료: 펀드닥터프로 DB 추출.

더불어 한국거래소(KRX)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녹색산업지수(KRX Green)를 산출 ·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 녹색사업)을 취득한 기업 등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2011년 5월말 기준 녹색인증기업 17사(녹색전문 3사, 녹색기술인증 14사), 비인증기업 3사로 구성되며, 2010년 1월 4일~동년 12월 14일 사이 녹색산업지수의 실적을 코스피200과 비교한 경우 기준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하였으나, 변동성으로 나타내지는 위험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녹색산업지수의 수익률은 22.7%, 변동성은 20.74% 인 반면, 코스피200의 수익률 18.6%, 변동성은 1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및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4월, 2015

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확정되었다. 동법은 준비 기관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 무상할당 비율, 기간간 이월, 과장금 등의 사항이 다소 수정되었다.[3)]

〈그림 5〉 녹색산업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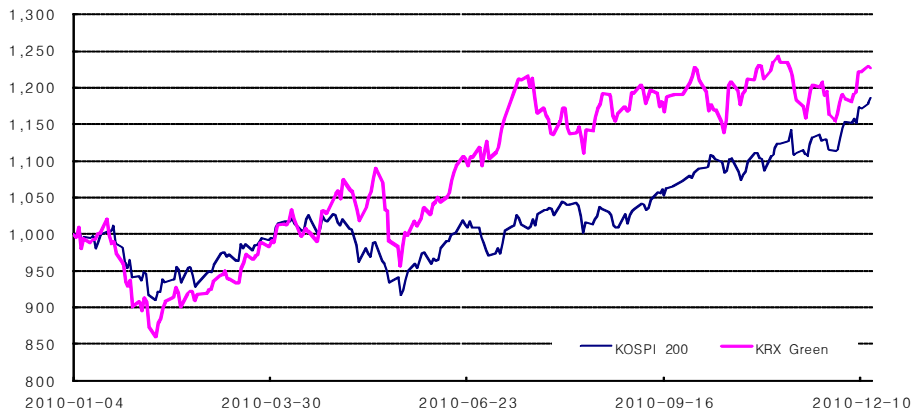

주: 2010년 1월 4일~020년 12월 14일.
자료: 한국거래소(2010).

2) 국내 녹색금융의 문제점

국내 녹색금융의 활성화가 미진한 주요 이유로 첫째, 녹색금융 지원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녹색인증제도를 통해 녹색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이 28사(2011년 4월 25일 기준)에 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하며, 따라서 세제 지원을 받는 녹색금융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녹색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이 60% 이상 녹색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녹색인증제와 연계된 녹색예금 · 채권 상품의 출시가 어려운 구조이

3) 동 법안은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며, 할당 대상 업체 지정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할당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이중 부담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금융 · 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할당 대상 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1차 계획기간에는 95% 이상으로 하며,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함.

다.

둘째, 이러한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녹색금융상품의 자금 유입과 공급간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확립될 수 없게 된다. 녹색금융상품의 운용구조는 녹색산업을 위한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은행 등이 장기예금 또는 채권 발행하는데 있어 녹색인증제도와 세제 지원제도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깨짐으로써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녹색프로젝트와 녹색기업에 공급하기 어려워지며, 은행의 경우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녹색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분석 기능 미흡으로 일정 조건 제시 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단순 여신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4] 이러한 제도는 지속가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발전 · 활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시장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이후 투자 회수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벤처기업 성격을 가지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녹색기업의 경우 지원 금융의 회수가 어렵다. 2011년 3월 신성장분야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를 위한 코스닥 상장 특례를 도입하여 자본시장 진입 요건 완화하였으나, 시행 초기 단계로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넷째, 금융기관이 출시하는 녹색금융상품의 경우 녹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금융투자업 관련 상품의 경우 환경 관련 종합적 정보 부족, 녹색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체계 부족, 녹색금융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녹색펀드와 일반 뮤추얼펀드 간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

다섯째, 녹색금융과 관련된 전반적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녹색금융지원 제도, 기업의 환경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체계, 환경에 대한 대부자 책임 등 관련 제도적 규율이 미비하고, 환경관련 DB 및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 및 평가 체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므로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문과 금융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녹색금융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며, 녹색대출 개시, 녹색기술 개발, 배출권(CER)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 기술 인프라 미비로 녹색금융과 탄소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한다.

여섯째, 녹색금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 일관성 부문에서 확신이 부족하다. 국내의 녹색산업 경쟁력지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정책일관성, 환경정책 효율성, 환경기술혁신 등이 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곱째,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

4)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고객의 에너지 절약 서약서 작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자전거 이용, 환경단체 가입 회원 등에 한하여 우대금리 0.1%~0.4% 제공하는 형태의 여신 금융상품을 제공함.

5)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SRI펀드 포트폴리오의 대형주 편입 비중은 2006년 이후 평균 77.34%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국내 환경펀드는 업종 대표주와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우량주 펀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지연 및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BAU 기준 30% 감축을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장시간에 걸쳐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선점효과가 존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지연시 국제적으로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중인 상태이다. 우리나라 거래제 대상 기업이 최대 470여개(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거래제를 시행할 대상 기업은 충분하다.

3.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1) 새로운 금융상품 허용과 거래시장의 개편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허용과 투자자금이 원활하게 선순환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시장의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녹색기업과 녹색산업의 고수익-고위험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이에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된 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해서 녹색산업에 실질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운용상의 제약과 설립 용이성 확보 및 펀드 운용자 요건 완화 등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방식의 녹색기업 지원 모태펀드(Fund of Fund)의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는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母펀드)로 결성하고, 母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및 서비스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초기자금(seed money)을 제공하여 모태펀드를 설정하고, 투자 조합 등 자펀드를 이후 구성하여 녹색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녹색펀드 구성시 자금의 일부를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반투자자도 자펀드에 참여하면 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일반투자자나 연기금에게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위한 거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현행 프리보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으로 현행 일반기업부, 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기업부 라는 3개 소속부를 가지고 있으나, 녹색기업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하여 녹색중소기업부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녹색인증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정책지원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녹색기업 모태펀드의 운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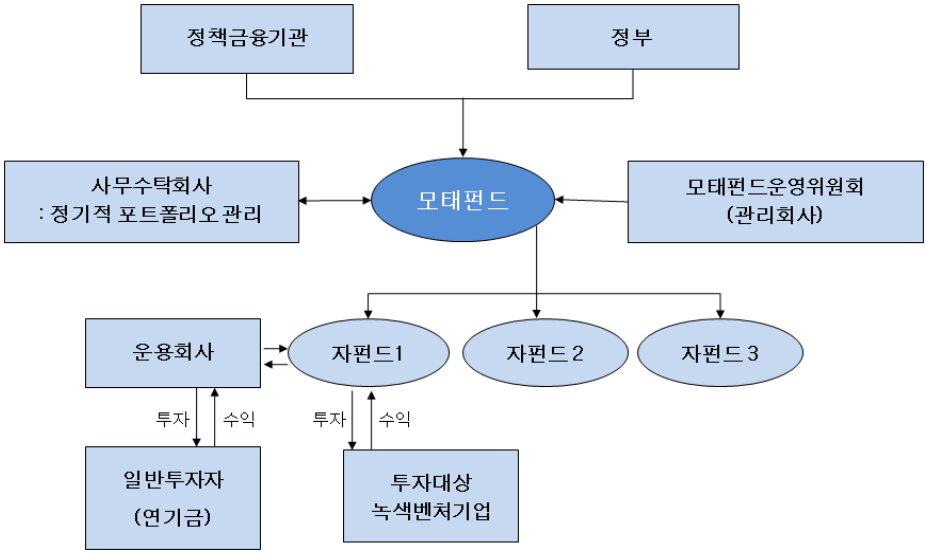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컨설팅회사가 프리보드 지정주선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IPO 전문 증권회사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시장 및 장외시장(Greensheet) 상장 자문 및 모집 · 매출 주선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7〉 녹색금융을 위한 프리보드의 소속부 제도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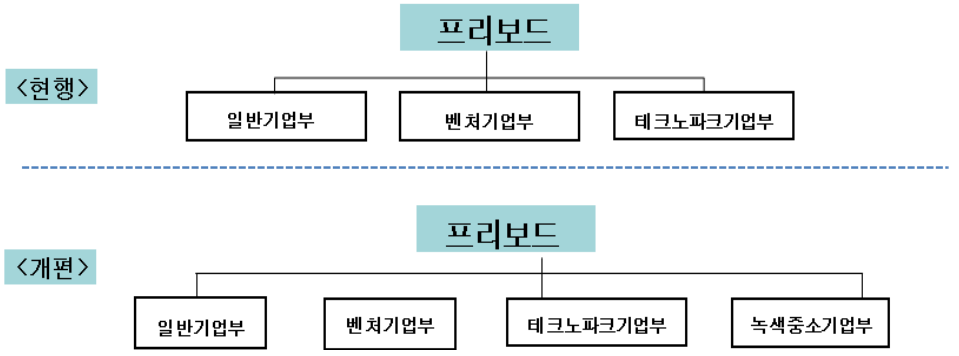

2)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기술 · 산업에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 저변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주요 법 · 제도에 환경 요건을 반영하도록 하여, 대부자 · 수탁자 책무에 환경 고려 의무화, 신용평가 및 회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KRX 등의 관련 규정에 ESG 정보 공개 요건을 반영하여 기업이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진하며,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관련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기업 지정 및 금융권의 녹색금융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녹색기업 · 산업 투자위험 관리 상품 도입, 업계 자율기반 구축, 상품명칭, 상품 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녹색금융상품 관련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신 · 투자기관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 녹색경영성과 및 리스크, 녹색사업 추진 현황, 녹색기술 보유 현황 등 기업 · 환경 정보 DB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녹색기업 분석 평가(Rating)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녹색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연수과정 및 금융 MBA에 녹색금융 전문 과정을 보완하여 기존 금융인력 대상으로 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금융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녹색금융 공익광고 실시 및 북미 지역의 "SRI in the Rockies"와 같은 녹색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녹색금융 관련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정책방향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지원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므로 녹색전문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설비 투자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이 필요하고, 따라서 녹색금융에 대한 종합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출자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보증기관, 정부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녹색도시, water finance, LED 사업 등 대규모 녹색금융이 필요한 경우 녹색전문은행과 민간은행이 공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30억 파운드의 자본으로 2012년 녹색은행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녹색인증 및 세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녹색인증제도와 세제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인증대상 기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청의 녹색기술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투자 대상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한 경우 녹색조달을 통한 대출로 인정하고 이후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함으로써 시중 자금을 신성장 분야로 유입하고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력이 있는 녹색 중소기업에게 녹색인증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성장 발전 필요성, 특히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이를 위한 녹색금융은 일시적 정책 기조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과제이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인지되므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소비자 출현 및 녹색금융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추세와 기업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가능한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거래소를 설치 · 운영하더라도, 그 이전에 실질적인 거래체계 준비 ·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금융적 시각에 입각하여 거래의 효율성, 유동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준비하도록 하며, 탄소 파생상품의 상장 · 거래를 허용함과 동시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 법인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 policy mix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N에 약속한 2020년까지 BAU 기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 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보도자료, 2011.

국무총리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4.12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보도자료, 2011.

기획재정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보도자료, 2009.

노희진, 녹색금융론, 박영사, 2010a.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0-01, 2010b.

노희진,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 프리보드 역할 제고방안 정책 토론회, 금융투자협회 발표 자료, 2010c.

노희진 · 빈기범 · 신인석 · 정의종,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금융투자협회, 2010.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 국무총리 보고 자료, 2011.

삼성경제연구원,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이재규 · 김현우 · 박종한, 맑고 푸른나라 설계, 머니플러스, 2010.

청와대,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1.

한국거래소, 녹색산업지수(KRX Green) 발표, 보도자료, 2010.

녹색인증제 www.greencertif.or.kr

녹색금융종합포털 www.green-finance.or.kr

GRI www.globalreporting.org

UNEP/FI www.unepfi.org

UN PRI www.unpri.org

UN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CDP www.cdproject.net